

협력기업 상호지원 업무협약서 개정대비표

(구매기업용-e-안심팩토링대출 및 장래채권 양도방식용)

1. 주요 개정 내용

| 현 행 | 개 정 | 비고 |
|---|---|-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협력기업 상호지원 업무협약서(구매기업용) (e-안심팩토링대출용)</p> <p>(주)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)과 _____ (이하 "구매기업"이라 하고, "은행"과 합쳐 "양 당사자"라 합니다)는 상호 협력하여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은행의 「매출채권(팩토링)거래」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기업 상호지원협약(이하 "이 협약"이라 합니다)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,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 및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 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.</p> <p>제 1 조 (협약의 목적) (기재생략)</p> <p>제 2 조 (협력기업의 정의) 이 협약에서 "협력기업"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(용역포함, 이하 같습니다)을 납품하는 거래기업 중 은행으로부터 이 협약과 관련된 매출채권(팩토링)거래에 따른 대출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외상매출채권(이하 "외상매출채권"이라 합니다)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은행과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.</p> <p>제 3 조(업무의 방법) ① (기재생략) ② 이 협약 및 은행과 협력기업 간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, 구매기업의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협력기업 상호지원 업무협약서 (구매기업용- e-안심팩토링대출 및 장래채권 양도방식용)</p> <p>(주)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)과 _____ (이하 "구매기업"이라 하고, "은행"과 합쳐 "양 당사자"라 합니다)는 상호 협력하여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은행의 「매출채권(팩토링)거래」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기업 상호지원협약(이하 "이 협약"이라 합니다)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,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 및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과 금융결제원의 「B2B업무규약」 및 「동 시행세칙」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.</p> <p>제 1 조 (협약의 목적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2 조 (협력기업의 정의) 이 협약에서 "협력기업"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(용역포함, 이하 같습니다)을 납품하는 거래기업 중 은행으로부터 이 협약과 관련된 매출채권(팩토링)거래에 따른 대출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외상매출채권(이하 "외상매출채권"이라 합니다)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과 매출채권(팩토링)거래 약정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.</p> <p>제 3 조(업무의 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이 협약 및 은행과 협력기업 간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, 구매기업의</p> | <p>용어 수정</p> <p>준용 약관 추가 등 문구 수정</p> <p>용어 수정</p> |

| | | |
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채권명세통보가 있는 때에 은행은 협력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일정한 조건으로 매입하며, 해당 매입대금은 원칙적으로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일에 지급합니다. 다만, 은행은 협력기업이 결제일 전 지급 요청을 하는 경우 협력기업을 채무자로 한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의(without recourse) 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(이하 "외상채권대출"이라 합니다)을 실행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</p> | <p>채권명세통보가 있는 때에 은행은 협력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일정한 조건으로 매입하며, 해당 매입대금은 원칙적으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지급합니다. 다만, 은행은 협력기업이 만기일 전 지급 요청을 하는 경우 협력기업을 채무자로 한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의(without recourse) 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(이하 "외상채권대출"이라 합니다)을 실행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</p> | <p>용어 수정</p> |
| <p>③ (기재생략)</p> <p>④ 외상채권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구매기업이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은행과 협력기업간 체결한 별도 약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, 은행은 매입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협력기업에게 해당 외상매출채권을 환매합니다.</p> |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외상채권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만기일까지 구매기업이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은행과 협력기업간 체결한 별도 약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, 은행은 매입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협력기업에게 해당 외상매출채권을 환매합니다.</p> | <p>용어 수정</p> |
| <p>제 4 조 (기본협약사항)</p> | <p>제 4 조 (기본협약사항)</p> | |
| <p>① (기재생략)</p> <p>② (외상매출채권의 양도)</p> <p>은행이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, 은행은 협력기업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하도록 하거나, 협력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 이에 대해 구매기업은 제4항에 명시된 사유가 없는 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.</p> |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외상매출채권의 양도 및 양도승낙)</p> <p>1. 은행이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, 은행은 협력기업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하도록 하거나, 협력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 이에 대해 구매기업은 제4항에 명시된 사유가 없는 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.</p> | <p>용어 수정 호 번호 신설</p> |
| <p>(신설)</p> | <p>2. 구매기업과 협력기업 사이에 체결한 물품 납품 계약 등에서 협력기업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, 구매기업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협력기업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은행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.</p> | <p>법무법인 검토 의견 반영을 위한 호 신설</p> |
| <p>③ (장래채권이 매 건별로 확정되었을 경우의 통보)</p> <p>1.~2. (기재생략)</p> <p>3.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은 발행일(통보일)로부터 180일 이내에서 정하기로 합니다.</p> | <p>③ (장래채권이 매 건별로 확정되었을 경우의 통보)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은 발행일(통보일)로부터 180일 이내에서 정하기로 합니다.</p> | <p>용어 수정</p> |
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--|--|--|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--|--|---|
| <p>④ (기재생략)</p> <p>1. 구매기업이, 협력기업이 당시까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2~3. (기재생략)</p> <p>4. 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압류, 가압류가 있거나 협력기업이 제3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한 경우</p> <p>5~6. (기재생략)</p> <p>⑤ (외상채권대출의 취급 및 제한)</p> <p>은행은 제3항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 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협력기업별 통보금액 범위 내에서 협력기업에게 외상채권대출을 취급하기로 합니다. 그러나 동 협력기업이 「신용정보관리규약」상 '연체 등' 정보가 등록되거나 은행의 내규상 여신의 비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전산상 장애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은행은 즉시 그 사실을 구매기업과 협력기업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⑥ (양도받은 채권의 관리 및 통지)</p> <p>구매기업은 은행이 양도 받은 협력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성실히 관리하여 은행의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금 채권보전에 적극 협조하고, 협력기업의 채권자가 위 외상매출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다거나 협력기업으로부터 제3자에게 위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은행이 협력기업으로부터 양도 받은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⑦ (외상매출채권의 지급)</p> <p>1. 구매기업은 제3항에 따라 은행에게 전산으로 통보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그 명세에 기재된 지급기일에 은행의 영업시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그 명세에 기재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입금하기로 합니다. [하나은행에 개설한 본인명의를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.]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0 1268 996 1348"> <tr> <td>예금주</td> <td>예금주 사업자번호</td> <td>계좌번호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 <p>2. 만기도래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은 별도의 청구서 없이 인출하여 외상채권대출</p> | 예금주 | 예금주 사업자번호 | 계좌번호 | | | |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협력기업이 당시까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2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(가)압류가 있거나 협력기업이 제3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한 경우</p> <p>5~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외상채권대출의 취급 및 제한)</p> <p>은행은 제3항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 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협력기업별 통보금액 범위 내에서 협력기업에게 외상채권대출을 취급하기로 합니다. 다만, 동 협력기업이 「신용정보관리규약」상 '연체 등' 정보가 등록되거나 은행의 내규상 여신의 비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전산상 장애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은행은 즉시 그 사실을 구매기업과 협력기업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⑥ (양도받은 채권의 관리 및 통지)</p> <p>구매기업은 은행이 양도 받은 협력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성실히 관리하여 은행의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금 채권보전에 적극 협조하고, 협력기업의 채권자가 위 외상매출채권을 (가)압류하였거나 협력기업으로부터 제3자에게 위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은행이 협력기업으로부터 양도 받은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⑦ (외상매출채권의 지급)</p> <p>1. 구매기업이 이 협약에 따라 은행에게 통보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구매기업 및 협력기업 간의 법률관계와 무관하게,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의 변제무를 부담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며, 그 명세에 기재된 만기일에 은행의 영업시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그 명세에 기재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입금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. [(주)하나은행에 개설한 본인명의를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.]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30 1348 1926 1428"> <tr> <td>예금주</td> <td>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</td> <td>계좌번호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 <p>2.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, 부득이한 사유로</p> | 예금주 |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| 계좌번호 | | | | <p>용어 삭제</p> <p>용어 수정</p> <p>용어 수정</p> <p>용어 수정</p> <p>법무법인 검토 의견 반영한 문구 수정</p> <p>호 체상, 체하 및</p> |
| 예금주 | 예금주 사업자번호 | 계좌번호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예금주 |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| 계좌번호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| | | |
|--|---|--|
| <p>취급분을 우선 변제하고, 미취급 분은 접수일자 순,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.</p> <p>3.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, 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예금자동대출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 및 이자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.</p> <p>4. 지급기일에 구매기업이 제1호에서 약정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협력기업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협력기업의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.</p> <p>5. 협력기업의 대출신청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입금받은 채권대금을 그 지급기일에 별도의 수수료를 공제함이 없이 전호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.</p> <p>(신설)</p> | <p>통장예금자동대출 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,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 및 이자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.</p> <p>3. 만기일이 도래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은 별도의 청구서 없이 출금하여 외상채권대출 취급 분을 우선 변제하고, 미취급 분은 접수일자 순,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.</p> <p>4. 협력기업의 외상채권대출 신청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입금 받은 채권대금을 그 만기일에 별도의 수수료를 공제함이 없이 제 3 호의 방법으로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.</p> <p>5. 만기일에 구매기업이 제 1 호에서 약정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협력기업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 3 호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.</p> <p>6.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처리 중 결제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이 제 3 호에서 정한 결제순서에 해당하는 건 별 외상매출채권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며 결제계좌 잔액보다 금액이 적은 채권이 없을 경우에는 결제되지 않습니다.</p> | <p>업무절차에 따른 문구 수정</p> <p>상동</p> <p>상동</p> <p>상동</p> <p>신설 및 상동</p> |
| <p>⑧ (외상매출채권의 취소 및 변경)</p> <p>구매기업이 제3항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 명세를 전산으로 통보한 경우,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하자, 전산조작오류, 기타 사유를 이유로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. 그러나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산통보를 받고 그에 기초하여 제5항에 따라 협력업체에 외상채권대출을 실행한 후에는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,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 명세에 따른 금액을 제7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⑨ (외상매출채권 지급채무의 범위)</p> <p>제3항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 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외상매출채권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외상채권대출을 실행한 이후에는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의 압류</p> | <p>⑧ (외상매출채권의 취소 및 변경)</p> <p>구매기업이 제3항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 명세를 전산으로 통보한 경우,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하자, 전산조작오류, 기타 사유를 이유로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. 다만,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산통보를 받고 그에 기초하여 제5항에 따라 협력업체에 외상채권대출을 실행한 후에는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,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 명세에 따른 금액을 제7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⑨ (외상매출채권 지급채무의 범위)</p> <p>제3항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 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외상매출채권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외상채권대출을 실행한 이후에는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의</p> | <p>용어 수정</p> |

또는 가압류의 통지를 받거나, 협력기업으로부터 제3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거나, 세무서 또는 조세공과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 통지를 받는 등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은행에게 그 대금을 제7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.

⑩ (외상매출채권의 환매)

- 은행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외상채권대출 또는 상생벤처구매론이 실행되지 않은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협력기업에게 환매하기로 합니다.
 - 가. 구매기업이 지급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지 못하는 때에는 자동환매되는 것으로 합니다.
 - 나. (기재생략)
 - 다. 은행이 지급기일 전이라도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지급 거절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협력기업이 환매하기로 합니다.

2. (기재생략)

⑪ (기재생략)

제5조 (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, 총 대출한도 및 지급의무)

- 은행은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매출채권(팩토링)거래 중 채권발행한도, 외상채권대출의 총 대출한도와 대출이자의 계산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.
(거래조건에 대한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"□"에 "✓" 표시 및 관련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.)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| 금 | 원 | | |
| 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 | 금 | 원 | | |
| 이자율 등 |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정금리 | <input type="checkbox"/>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연()% | | |
| | <input type="checkbox"/> 변동금리 |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금리() + ()% | | |
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금리() + 기간별가산금리 | | |
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1- | <input type="checkbox"/> 16- | <input type="checkbox"/> 46- |

(가)압류의 통지를 받거나, 협력기업으로부터 제3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거나, 세무서 또는 조세공과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 통지를 받는 등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은행에게 그 대금을 제7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.

⑩ (외상매출채권의 환매)

- 은행은 제5항에 따라 외상채권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협력기업에게 환매하기로 합니다.
 - 가.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지 못하는 때에는 자동환매되는 것으로 합니다.
 - 나. (기재생략)
 - 다. 은행이 만기일 전이라도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지급 거절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협력기업이 환매하기로 합니다.

2. (현행과 같음)

⑪ (현행과 같음)

제5조 (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, 총 대출한도 및 지급의무)

- 은행은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, 외상채권대출의 총 대출한도와 대출이자의 계산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.
(거래조건에 대한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"□"에 "✓" 표시 및 관련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.)

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|---|
|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| 금 | 원 |
| 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 | 금 | 원 |
| 이자율 등 |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금리() + 가산금리()% | |
| | <input type="checkbox"/>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연()% | |

용어 수정

항 삭제 및 문구 삭제

용어 수정

용어 수정

문구 삭제

이자율 적용 기준 반영

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| | 1 5 일 | 4 5 일 | 7 5 일 | 1 0 5 일 | 1 8 0 일 |
| | | () % | () % | () % | () % | () % |
| 지연배상금률 | 지연배상금률은 제 5 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. 단, 최고지연배상금률은 연 %로 합니다. 연체가산율이 ()개월 이하인 경우 : 연 % 연체가산율이 ()개월 이하인 경우 : 연 % 연체가산율이 ()개월 초과인 경우 : 연 % | | | | | |
|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| 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 | | | | | |
| 변 제 방 법 | 개별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. | | | | | |

※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지정계좌 입금 분은 당일 중 변제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② (기재생략)
- ③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대출을 취급한 경우, 만기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"당일만기 외상채권대출(이하 "당일만기대출" 이라 합니다)"을 실행하여 협력기업의 대출을 상환합니다.
- ④ (기재생략)

제 6 조 (협력기업의 대출신청 방법 및 대상)

- ①~② (기재생략)
- ③ 은행의 전산상의 사유로 해당일에 대출을 취급치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영업일에 대출취급하기로 합니다.
- ④ (기재생략)

| | |
|-----------------|---|
| 지연배상금률 | 지연배상금률은 제5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연체가산율 ()%를 더하여 결정하며, 최고 연()%로 합니다. |
|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| 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 |
| 변 제 방 법 | 개별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. |

※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지정계좌 입금 분은 당일 중 변제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대출을 취급한 경우, 명세에 기재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"당일만기 외상채권대출(이하 "당일만기대출" 이라 합니다)"을 실행하여 협력기업의 대출을 상환합니다.
- ④ (현행과 같음)

제 6 조 (협력기업의 대출신청 방법 및 대상)

- ①~② (현행과 같음)
- ③ 은행의 전산 상 장애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당일에 대출을 취급치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영업일에 대출취급하기로 합니다.
- ④ (현행과 같음)

여신거래약정서 (기업용)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

용어 수정

문구 수정

문구 수정

제 7 조 (한도 감액, 정지)

- ① (기재생략)
 - 1.~2. (기재생략)
 - 3.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 제11조에 의하여 거래제한될 때
- ② (기재생략)

제 8 조 (협약서 효력)

- ①~② (기재생략)
-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해 이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구매기업이 이 협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해당 채권의 **결제일까지** 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④ 이 **협약과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** 이 협약이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
제 9 조 (관할법원의 합의)

이 협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**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본점 · 지역본부 또는 구매기업의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**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
제 10 조 (기타 특약사항)

(기재생략)

20 년 월 일

[은행]

주식회사 하나은행 _____(인)

주 소 :

[구매기업]

기업명 : _____(인)

주 소 :

제 7 조 (한도 감액, 정지)

- ① (현행과 같음)
 - 1.~2. (현행과 같음)
 - 3.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 제11조의 2에 의하여 거래 제한될 때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 8 조 (협약서 효력)

- ①~② (현행과 같음)
-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해 이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구매기업이 이 협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해당 채권의 **실제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** 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④ 이 **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상충되는 사항은** 이 협약이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 제 18 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
제 9 조 (관할법원의 합의)

이 협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**민사소송법이 정하는**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
제 10 조 (기타 특약사항)

(현행과 같음)

20 년 월 일

[은행]

주식회사 하나은행 _____(인)

주 소 :

[구매기업]

기업명 : _____(인)

주 소 :

준용 약관 기재

법무법인 검토
의견 반영한 문
구 수정

문구 수정

2. 개정 시행일 : 2019년 5월 30일

3. 기 거래 고객에 대한 적용: 적용